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최 동 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 - 67
----------	-----------

발의일자 : 2020. 6. .

발 의 자 : 최동철, 신낙형, 김동협, 이의결,
정정희, 김성한, 황영호, 박주선

1. 의결주문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함.

3. 결의문 : 붙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 태도를 규탄하며, 제21대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어야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가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